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11. 23 선고 2020가단227341(본소), 2021가단200701(반소)

판결 [공사대금 · 과지급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엠케이

담당변호사 문종술, 문상윤

피고(반소원고)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

변론 종결2022. 10. 5.

판결 선고2022. 11. 23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626,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8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4,154,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4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중 75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 25%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구취지

본 소 청구 취지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142,805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 소 청구 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58,609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'C'이라는 상호로 철근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,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.

나. 원고는 2018. 12. 1. 피고와 사이에, 원고가 부산 진구 D, E 일원에서 시행되는 'F 신축공사' 중 철근공사(이하 '이 사건 제1공사'라 한다)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제1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. 공사명: F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
2. 공사장소: 부산광역시 진구 D, E 일원
3. 공사기간 : 2018년 12월 01.일부터 2020년 03월 25.일까지
4. 계약금액 : 일금칠억팔천만원정(₩780,000,000, VAT포함)
공급가액 : 일금육억팔천만원정(₩680,000,000/-)
부가가치세 : 일금칠천팔백만원정(₩78,000,000/-)
5.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.

가) 선금금 : 없음

나) 기성부분금: 월 (1)회

월 마감 기성검사 완료 후 익월 말일 현금지급

6. 지급자재 : 철근, 커플러

7. 공사의 개요

1) 공사명 : F 신축공사

2) 위치: 부산광역시 진구 D, E 일원

3) 지역지구 :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중심미관지구(G 지구) 가로구역 외

4) 대지면적 : 1,491.60㎡ (451.21평)

5) 건축면적 : 1,103.66㎡ (333.86평)

6) 연면적 : 21,589.96㎡ (6,530.96평)

7) 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/일부 철골조

8) 공사규모 : 지하4층(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 등), 지상 19층

라. 원고는 2019. 3. 1. 피고와 사이에, 원고가 부산 동래구 H 일원에서 시행되는 'I 신축공사' 중 철근공사(이하 '이 사건 제2공사'라 한다)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마.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. 공사명: I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

2. 공사장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H 일원

3. 공사기간 : 2019년 03월 01.일부터 2020년 07월 25.일까지

4. 계약금액 : 일금구억오천칠백만원정(₩957,000,000-/-, 부가세포함)

공급가액 : 일금팔억칠천만원정 (₩870,000,000-/-)

부가가치세 : 일금팔천칠백만원정 (₩87,000,000-/-)

5.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.

가)선금금 : 없음

나) 기성부분금 :월 (1)회

월 마감 기성검사 완료 후 익월 말일 현금지급

6. 지급자재 : 철근, 커플러, 제진댐퍼.

7.공사의 개요

1) 공사명 : I 신축공사

2) 위치: 부산광역시 동래구 H 일원

3) 지역지구 :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가로구역, 온천지구 외

4) 대지면적 : 2,543.0000㎡ (769.26평)

5) 건축면적 : 1,571.1172㎡ (475.26평)

6) 연면적 : 34,730.9428㎡ (10,506.11평)

7) 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/일부 철골조

8) 공사규모 : 지하5층(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 등), 지상 24층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

1)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680,000,000원, ② 추가공사대금(커플러 시공비 및 직영비) 합계 27,000,000원, ③ 공상처리비(J) 2,000,000원의 합계 709,000,000원을 지급해야 한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650,516,060원만 지급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8,483,940원(= 709,000,000원 - 650,516,060원)이다.

2)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70,000,000원, ② 추가공사대금 합계 139,936,500원(= ㉠ 돌관공사1) 비용 84,870,000원 + ㉡ 커플러 시공비 14,026,500원 + ㉢ 추가직영비 30,000,000원 + ㉣ 골공방작업2) 비용 11,040,000원), ③ 공상처리비(K) 7,000,000원의 합계 1,016,936,500원을 지급해야 한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932,614,940원만 지급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제2공사와

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84,321,560원(= 1,016,936,500원 - 932,614,940원)이다.

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42,805,500원(= ① 이 사건 제1공사 58,483,940원 + ② 이 사건 제2공사 84,321,56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

1)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670,000,000원인데,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674,266,000원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4,266,000원(= 674,266,000원 - 670,000,000원)을 초과 지급하였다.

2)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936,900,000원인데,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991,243,260원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54,343,260원(= 991,243,260원 - 936,900,000원)을 초과 지급하였다.

3)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수령한 공사대금 합계 58,609,260원(= ① 이 사건 제1공사 4,266,000원 + ② 이 사건 제2공사 54,343,26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가)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다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9호증의 기재,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 측의 L(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)와 원고 측의 M(원고의 배우자)가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가결산을 하면서 '철근 시공물량'을 2,168톤(계획물량보다 131톤 감소된 양)으로, 이와 같은 철근 시공물량을 반영한 '공사대금'을 641,111,099원으로 각 정리하였던 점, ② 원고와 피고가 위 가결산 이후에 다시 최종 정산을 하기로 정하였지만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감소된 철근 물량이 원고가

주장하는 바와 같이 41.426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원고와 피고가 가결산을 하였던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이 641,111,099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) 피고가 원고에게 커플러 시공비 27,000,000원과 J의 공상처리비 2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.

다)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은 합계 670,111,099원(= ① 이 사건 제1공사 공사대금 641,111,099원 + ② 커플러 시공비 27,000,000원 + ③ 공상처리비 2,000,000원)이다.

2) 피고의 변제 내용 가) 원고는,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650,516,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.

나) 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① N에게 지급한 지게차 사용료 10,700,000원, ② O에게 지급한 하이드록크레인 사용료 13,050,00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, 위 돈의 합계 23,750,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을 제4, 5, 14, 20, 21호증의 각 기재,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① 특기시방서 제1. 공통사항의 6)항이 '현장 내 자재정리 및 운반은 원고의 공사범위이며, 필요장비는 원고가 공급하여야 한다.'고 정하고 있는데, N의 지게차가 작업한 내용의 대부분이 철근 하차·운반·정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특기시방서 제1. 공통사항의 34)항과 제2. 공사범위의 각 내용을 보면,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이전의 장비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, 하이드록크레인 사용료는 위에서 말한 '타워크레인 설치 이전의 장비대금'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피고가 N에게 지게차 사용료 10,700,000원을, O에게 하이드록크레인 사용료 13,050,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위 업체들에게 지급한 합계 23,750,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다) 결국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674,266,060원(= 650,516,060원 + 23,750,000원)이고, 위 금액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한다.

3)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, ①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, ②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수령한 공사대금 4,154,961원(=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674,266,060원 -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670,111,099원)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. 1. 14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1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가)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를 완료한 사실,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870,0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) 돌관공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, 8,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2019. 11. 30.경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, ② L가 원고에게 '돌관공사비는 별도 처리함'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, ③ 돌관공사를 위해 조출, 야간 근로를 한 작업자들의 노무비가 합계 84,870,000원(= 작업일수 369일 × 노임단가 230,000원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돌관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 84,870,000원을 인정한다.

다)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직영비 명목으로 3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직영비채권 30,000,000만원을 인정한다.

라) 커플러 시공비용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도의 커플러 시공비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오히려 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L와 M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가결산을 할 때 '커플러 시공비'와 '직공비'를 하나의 항목으로 하여 그 대금을 27,000,000원으로 정하였던 점, ② L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'철근 추가직영비'는 30,000,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추가직영비 30,000,000원에는 커플러 시공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

받아들이지 않는다.

마) 원고는 골공방작업과 관련하여 11,040,000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골공방작업(훼손된 철근의 조립 상태를 보수하는 작업)이 이 사건 제2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작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바) K의 공상처리비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7, 8,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K이 '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.'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, ② 원고가 K에게 병원비 등 합계 14,4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, ③ L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(갑 제8호증)의 내용은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, 위 확인서에 '공상처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50%씩 배분 처리한다.'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원고에게 K의 공상처리비 7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.

사) 따라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은 합계 991,870,000원(= ① 이 사건 제1공사 공사대금 870,000,000원 + ② 돌관공사비 84,870,000원 + ③ 추가직영비 30,000,000원 + ④ K의 공상처리비 7,000,000원)이다.

2) 피고의 변제 내용 가) 원고는,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932,614,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.

나) 피고는,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66,900,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) 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① P에게 지급한 부속자재 비용 등 2,552,820원, ② Q에게 지급한 지게차 사용료 7,730,000원, ③ O에게 지급한 하이드록크레인 사용료 48,345,50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, 위 돈의 합계 58,628,32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을 제11, 12, 13, 14, 18, 19호증의 각 기재,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① 특기시방서 제1. 공통사항의 6)항이 '현장

내 자재정리 및 운반은 원고의 공사범위이며, 필요장비는 원고가 공급하여야 한다.'고 정하고 있는 점, ② P에게 지급한 부속자재 비용은 철근 작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, ③ Q의 지게차가 작업한 내용의 대부분이 철근 하차·운반·정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특기시방서 제1. 공통사항의 34)항과 제2. 공사범위의 각 내용을 보면,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이전의 장비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, 하이드록크레인 사용료는 위에서 말한 '타워크레인 설치 이전의 장비대금'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피고가 P에게 2,552,820원을, Q에게 7,730,000원을, O에게 48,345,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위 업체들에게 지급한 합계 58,628,32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다) 결국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991,243,260원(= 932,614,940원 + 58,628,320원)이다.

3)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, 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6,740원(=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991,870,000원 -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991,243,260원)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12. 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1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이비용

- 1) 건설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의미한다.
- 2) 훼손된 철근의 조립 상태를 보수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.